

낙태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 임소원 국립강릉원주대 3학년 | ⓒ 승인 2025.09.01 08:47



임소원 국립강릉원주대 3학년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대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은 입법 공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낙태와 살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소비되며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가 SNS에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낙태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해고 절차에 놓인 사건도 있었다. 이는 개인의 윤리를 넘어, 낙태에 대해 얼마나 가볍고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입법 공백은 단순한 정치적 지연이 아닌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사회 문제다.

나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이처럼 잘못된 소비가 개인의 윤리나 도덕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극적인 소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낙인을 강화해 여성을 더욱 고립시킨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의 부재가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구조적 결핍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낙태를 고민하거나 경험한 여성에게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와 의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는 피임 정보의 공공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성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특히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와 같은 제도를 제시하며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사회에 알려야 한다. 물론 보호출산제가 모든 상황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위기 임신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낙태를 자극적인 논쟁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

앞으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에도, 지금처럼 이들과 단단히 연대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사회복지사로서 책임 있게 동행하고자 한다.



임소원 국립강릉원주대 3학년